로고	정	!보공개서	인터넷 주소
한끼의 행복	등록번호	20130518	
헤(나올김밥	최초 등록일	2013. 12. 27.	www.chedaol.com
2. 233	최종 등록일	2024. 11. 08.	

[채다올김밥]

정 보 공 개 서

[다올에프엔씨]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다올에프엔씨]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 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 주소 [대구시 중구 동덕로 115, 1112(삼덕동2가, 진석타워즈)]

가맹본부 대표전화번호 [1899-5059]

가맹본부 대표팩스번호 [-]

가맹사업 담당부서 가맹사업팀 [1899-5059]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행복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 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 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ㅡ 한끼의 행복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 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 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본 정보공개서에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 가맹사업(다올에프엔씨의 "채다올김밥")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

여하는자

·귀하:당사와 "채다올김밥" 가맹계약 체결을 위하여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은 가맹희망자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채다올김밥	대구시 중구 동덕로 115, 1112(삼덕동2가, 진석타워즈)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다올에프엔씨	개인사업자	2013.11.30	유하경	1899-5059	_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504-30-09247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 해당사항 없음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 해당사항 없음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채다올김밥]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채다올김밥집	_
상 호	채다올김밥 []점	_
상표(서비스표)	刘艺艺	_
광고	_	_
그 밖의 영업표지		_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298,745	257,671	41,073	700,491	48,881	40,355
2022	284,042	258,921	25,120	924,903	44,688	34,908
2023	308,012	244,649	63,362	966,233	48,171	38,242

하끼의 행복

[별첨1] 참조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1)항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려신터 이른		=1 7101	사업경력					
관련여부	이름 현 직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유하경	대표	2013.11.30~현재	채다올김밥 대표	사업 총괄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 해당사항 없음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Al a	상근	비상근	국건구(8)
2023년 12월 31일	1	0	1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채다올김밥]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해당사항	없음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일자	등록번호	소유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 첫 원 (1) [채다올 김밥 집]	서비스표	2013.11.08	4102728480000	김필섭	2023.11.08
対する [채다올 김밥 집]	서비스표	2014.01.21	4010191490000	김필섭	2024.01.21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채다올김밥] 가맹사업 현황

1. [채다올김밥]을 시작한 날: 2014년 2월 1일

2. [채다올김밥]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올에프엔씨	채다올김밥	김필섭/	2013.11.30.~	대구시 중구 동덕로 115, 1112
다들에프엔씨 새다들김립 		유재은	2016.3.30.	(삼덕동2가, 진석타워즈)
다오에 표에 때	C1	유재은	2016.3.31. ~	대구시 중구 동덕로 115, 1112
다글에스엔씨	다올에프엔씨 채다올김밥		2020. 06. 01.	(삼덕동2가, 진석타워즈)
다오에ㅠ에베	채다올김밥	유하경	2020. 06. 02. ~	대구시 중구 동덕로 115, 1112
다올에프엔씨	게나물심합	ਸ਼ਹਾਰ	현재	(삼덕동2가, 진석타워즈)

3. [채다올김밥] 업종

영업표지	업종		
채다올김밥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세나들음합	분식	김밥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채다올김밥]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	021.12.3	1.	2	022.12.3	1.	2	023.12.3	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24	24	0	23	23	0	22	22	0
서울	0	0	0	0	0	0	0	0	0
부산	0	0	0	0	0	0	0	0	0
대구	19	19	0	19	19	0	18	18	0
인천	0	0	0	0	0	0	0	0	0
광주	0	0	0	0	0	0	0	0	0
대전	0	0	0	0	0	0	0	0	0
울산	1	1	0	1	1	0	1	1	0
세종	0	0	0	0	0	0	0	0	0
경기	2	2	0	2	2	0	2	2	0
강원	0	0	0	0	0	0	0	0	0
충북	0	0	0	0	0	0	0	0	0

충남	0	0	0	0	0	0	0	0	0
전북	0	0	0	0	0	0	0	0	0
전남	0	0	0	0	0	0	0	0	0
경북	2	2	0	1	1	0	1	1	0
경남	0	0	0	0	0	0	0	0	0
제주	0	0	0	0	0	0	0	0	0

5. 최근 3년간 [채다올김밥]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16	11	3	0	3	24
2022	24	1	1	1	0	23
2023	23	0	1	0	0	22

6. [채다올김밥]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채다올김밥]외에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 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개/천원, 부가세미포함)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지역	가맹점	연간평균	군매출액	연간평균매	출액(상한)	연간평균매결	틀액(하한)	비고	
N H	수	연간 평균	면적	상한	면적	하한	면적		
		매출액	3.3㎡당	92	3.3㎡당	아인	3.3㎡당		
전체	22	168,788	11,218	317,417	19,105	45,928	3,532	-	
서울	0	_	-	_	_	_	_	_	
부산	0	_	-	_	_	_	_	_	
대구	18	161,685	11,023	276,021	19,105	45,928	3,532	_	
인천	0	_	_	_	_	_	_	_	
광주	0	_	_	_	_	_	_	_	
대전	0	-	_	_	_	_	_	_	
울산	1	_	_	_	_	_	_	_	
세종	0	_	_	_	_	_	_	-	
경기	2	_	-	_	_	=-	_	_	
강원	0	_		_		_	_		
충북	0						_	_	
충남	0			_		_	_		
전북	0	_	_	_	_	_	_	_	

전남	0	_	_	_	_	_	_	_
경북	1	_	_	_	_	1	_	_
경남	0	_	_	_	_	_	_	_
제주	0	_	_	_	_	_	_	_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를 근거로 기재한 것입니다.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 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조 제 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채다올김밥]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채다올김밥]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 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단위:日)
2023	22 = -	2,044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채다올김밥〕가맹점을 관리하는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가 없습니다.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당사의 광고 및 판촉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구분	수단	기간	(단위: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_	_	25	_	_	_
광고	_	_	25	_	_	

☞광고 및 판촉비를 가맹점 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본 정보공개서의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의 9. 광고 및 판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 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영업과	대구시 중구 대봉동 24-37	053-422-2501

귀하는 [8]페이지에 기재된 가맹금을 [별첨2]의 서식을 작성하여 [국민은행]에 계약 체결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작성된 예치신청서를 지참하시고,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국민은행에 방문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 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해당사항 없음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 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한끼의 행복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 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 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 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채다올김밥]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49.5m²기준 [60,390]천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상·하수도 및 화장실 공사, 외부공사 및 철거, 냉·난방시설, 소방공사, 음향시설, TV, 전기/가스 증설, 오픈행사, 인·허가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까의 행복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의 나 오기바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총계	[6,600]			
가맹비	3,300	계약 체결일		개점 전: 인도된 제품 및 제공된 서 비스(정보제공 및 노하우의 대가 등) 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 개점 후: 반환하지 않음
교육비	3,300	계약 체결일	교육개시 전 계약해지	교육개시 전: 전액반환 교육개시 후: 반환하지 않음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보증금	없음	_	_	1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6,600]천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6,600
가맹비	3,300(부가세 포함)
교육비	3,300(부가세 포함)
계약이행보증금	이 집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천원/부가세포함/49.5m²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53,790]	3,586			점포 및 장비 사안에 따라 변동 가능
인테리어	협력업체	24,750	1,650	협의		
주방기기/ 기물 등	협력업체	15,400	1,026	협의		
의탁자	협력업체	5,060		협이	공사 및	4인 6세트기준 (세트당 850천원추가)
간판	협력업체	3,300		협이	입고 전 계약 취소	-3m기준 -m당 550천 원추가
최초 공급 상품 비용) 가맹본부	2,750		협의		
POS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미정)	1,650		협의		구매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가맹본부	880	. 휴나네이 헤넌	협의		소모품비 등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기메저시어지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가맹점사업자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
	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당사 점포개발팀이 최적의 입지를 도출해 주지만, 가맹점사업자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 정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입지선정에 당사가 조언을 할 수 있으나,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 인테리어 자체시공시 인테리어 디자인비용 3.3㎡당 440,000원(부가세포함)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하수도 및 화장실 공사, 외부공사 및 철거, 냉·난방시설, 소방공사, 음향시설, TV, 전기/가스 증설, 오픈행사, 인·허가, 어닝, 외부테라스, 정수기, CCTV, 조명, 주방배수설비, 시설외 창고공사, 폴디도어 등의 비용은 별도입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및 신용불량자가 아닐 것	만19세 이상을 원칙으로 함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ㆍ공급업체

[채다올김밥]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귀하는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광고·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광고성격에 따라 다름	광고비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2주 이내	광고 미시행	광고시행 후	V. 9. 1)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참조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 변경 비용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미정)	협의	협의	시공 전	시공 후	교체 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POS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미정)	협기	협의	반환불가	실비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추후 산정	협의	교육 미시행시		
점포환경개		가맹본부가 요구시 :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선비용		WI.1 외 비용 부담		의하여 점포환경개선들 실시하는 경우는 예외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20%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금전 지급 기일 경과시	길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QSC관리	매장 내 품질, 서비스, 청결 등 점검	수시(방문시)	
회계처리	상품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에	가맹본부의	문의:
외계시니	대하여 감독	요청시	(1899-5059)
재고관리	실재제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분기별 1회	
	비교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정기적으로 당사의 직원을 통하여 당사가 정한 규정 이외의 품목 취급 여부, 공급품의 보관상태 등 매장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 관리, 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장의점검 및 확인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 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가맹사업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과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당사가 정보공개서 작성을 위해 귀하의 연 매출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한 별도의 부담은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 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 게 된 경우,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비용을 협의하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 하도록 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당사는 위약벌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권을 양수 받고자 하는 경우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가맹비, 교육비와 이행보증금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계약이 종료되면 가맹점사업자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당사에 대한 채무 전액을 당사에 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영업표지나 노하우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위영업표지가 표기된 모든 시설물·비품·집기 및 당사의 모든 영업비밀자료(매뉴얼 등)등 을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철거하고 원상회복 하여야 합니다. 이때 철거·원상회복의 비용은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철거 · 원상회복의무를 지체한 경우에는 당사가 직접 철거 · 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 및 손해에 대하여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제출하는 철거 · 원상회복에 관한 확인서를 통하여 철거 · 원상회복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해주어야 한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의 영업양수도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해지)된 경우 신규 가맹점사업 자에게 업무의 인수인계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물품 구입 및 임차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나) 주요 품목 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별첨 4] 참조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귀하가 [채다올김밥]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 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채다올김밥]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 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채다올김밥]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 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ㆍ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1회 위반: 구두 경고	
[별첨 5] 참조	수 없습니다. 다만, 가맹점의 특성에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따라 당사와 협의하여 일부 조정이	3회 이상 위반: 상품공급중단	
	가능합니다.	또는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

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ㆍ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경쟁업체	가맹본부 또는	고객판매용도 외에	1회 위반: 구두 경고
가맹본부가 공급을	가맹본부가 지정한	기재된	2회 위반: 서면 시정요
중단한 가맹점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공급	7 3회 이상 위반: 상품공
다른 가맹점사업자	상품 및 제품	및 판매	급중단 또는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원)	단위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당사의 공문을	-권장가격은
[별첨 5] 참조			통하여 별도로 공지를	지역별로 상이할 수
			합니다.	있음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622 G6 G7	가맹본부	계열회사
김밥 및 분식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채다올김밥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특수상권 및 활성화상권이 아닐 경우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400m 단, 특수상권 (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휴게소, 대형 쇼핑 몰, 종합병원 등) 및 활성화상권(홍대입구, 명동, 이태원, 부산 서면 및 해운 대, 대구 동성로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 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 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 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 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 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끼의 행복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채다 올김밥'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채다올김밥]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없음	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영업표지의 전체 상품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 수의 비중 및 온라인 전용상품 수의 비중

하끼이 해보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채다올김밥〕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의 가맹계약 기간: 2년
- 재계약 또는 갱신시 계약기간: 2년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 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 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예→B, 아니오→®	D-180 ~ D-90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앵녹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_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_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9]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 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 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	
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6조 제2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이영우 대한민국 돈까스]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 ·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	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		
산에 압류•경매 신청이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가	•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가맹점의 상표에 대한 신용 또는 제품 판		
매에 손해를 끼친 경우		
○ 가맹본주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가맹본부 의		
상호 또는 상표 아래 가맹본부의 상품을 가맹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한끼의 행복		
○ 가맹본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가맹점의 표시 등을 임의로 변경하		
는 경우	-	
○ 가맹점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교육의 이수를 해태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치가맹금의 지급에		
필요한 증명서류 또는 확인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동종업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	제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서 제시한 품질기준과 영업관리기준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임의로 메뉴를 변경·추가하거나		
가맹본부에 의해 변경된 메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공급상품을 자체 조달하여 사용하거나 타 업소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부터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		
□ 다양님씨입자가 가장받수 모든 가장받수도부터 사용한 입제모부터 중 □ 급받은 상품을 고객판매 용도 외 타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		
○ 가맹점사업자가 주문한 상품의 대금결제를 1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연	-	
제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하거나 품질	-	
검사를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가맹본부가 지정한 복장을	1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운영매뉴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시설의 교체나 보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	
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동의 없이 점포의 권리이전, 명의변경	
을 하였을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불만사항을 접수를 받고도 시정하지 아	
니하는 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 가맹본부의 사전승인없이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한 경우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	II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데 26 天	. 제2항
경우	MISOT	: MIZ8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제36조	제2항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	데 26 天	. 제2항
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MIOOT	. MIZ 6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		
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		
우	제36조	제2항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	제36조	. 제2항
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		
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		
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		
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THEOT	TILO =1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	세36소	. 제2항
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		
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36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	제36조	제2항
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	제36조	데그하
우	MISOT	MI 2 8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은 후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 조문
○ 양당사자의 상호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경우	제44조 제2항

당사가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 수정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게되는 예상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가맹점사업자와의합의를 거쳐 정하고 있습니다.

	AND THE REPORT OF THE PARTY OF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동의가 없는 경우 기존 계약 내용 적용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 다.

- ① 귀하가 제3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기 1개월 전에 당사의 서면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② 당사는 승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단,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귀하에게 통지합니다.
- ③ 당사의 서면승인을 받은 귀하의 양수인은 잔여계약 기간이 인정됩니다. 단, 귀하의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 체결을 원할 경우 가맹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④ 귀하의 양수인은 영업개시 전까지, 당사가 정한 소정기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⑤ 당사의 사전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도는 당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당사가 양도를 승인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상속	상속인 사후 통지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 상속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계의 의사를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음 - 상속인은 영업개시 전까지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에 대한 교육비용은 상속인이 부담함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 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 본부는 영업의 상속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 며, 이 경우 가맹계약은 종료된다.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본인이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본부의 사전승인 하에 대리경영을 시킬 수 있으며,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업무위탁	불가능	_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전지역에서 귀하가 [채다올김밥]의 직영점 및 각 가맹점사업자의 거점지역 내에서 귀하가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채다올김밥]과 동종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일반인에게 김밥, 분식 및 당사가 취급하는 물품	당사는 계약기간 존속 중은	
등을 판매 및 배달하는 업종 및 이와 관련된	물론이고 본 계약종료 및	문의:
가맹사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해지, 해제 후 2년 동안	(1899-5059)
경영 등) 및 샵인샵 등	경업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채다올김밥]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자율	자율	1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TI Q	TI Q	점주의 배우자,	점주의 부재시
자율 	자율	직계가족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4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친절도(5항목)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수시	당사 (1899-5059)	
품질 관리(7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채다올김밥]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담비율	분담 절차	
구분	광고 성격	 본사부담			비고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의50% / 가맹점수=1개 가맹점 부담금	광고 계획 공고→가맹점	대중매체 광고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가 맹점모집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의 광고 참여 여부 결정→가맹점	명절, Day 이벤트 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부담액제시(명세서)	(전국 광고 행사)
가맹점 개별 광고 행사		가맹점		가맹점 단독 광고 행사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월의 참여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액을 균분하여 산정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공동광고는 전체 가맹점의 50% 이상 동의 시 전체 적용하여 진행 할 예정입니다.
- ※공동판촉은 전체 가맹점의 70% 이상 동의 시 진행하며, 70% 미만의 경우 동의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판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귀하는 광고 디자인(전단지, 책자, 자석전단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단독으로 판촉활동을 할 경우 판촉활동의 자료, 문구, 기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당사로부터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위약벌을 청구하 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제26조(자점매입의 금지 등)를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벌로 금오천만원(₩5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가 제22조(영업의 표준화와 판매가격)를 위반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벌로 금오천만원(₩5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위약벌로 당사에 금오 천만원(₩5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제6조(계약기간과 갱신)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폐업처리하거나 [채다올김밥]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 금이십만원(₩200,000)씩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종료 이후 제18조(비밀유지 의무), 제19조(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벌로 금오천만원(₩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종료 후 당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위약벌로 1일 금오십만원(₩500.000원)씩 당사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에 지급해야하는 위약벌은 계약이행보증금에서 우선 상계처리하도록 합니다.

당사의 지급요청일에 귀하가 지체배상금 및 위약벌을 지체하거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금에 대한 지급기한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당사에게 지급기간경과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귀하는 연이율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이에 대한 채권 채무의 관계에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비용을 법무비용을 포함하여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 또는 당사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당사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 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49.5m²기준**)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5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즉시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계약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제공	D-45	
가맹계약 체결	정보공개서 및 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가맹계약 체결 한끼의 행복	정보공개서 및 계약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난 후	
가맹금 예치	- 가맹비: 3,300 - 교육비: 3,300 -계약이행보증금: 없음 위 금액을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가맹계약 체결 후 즉시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점포계약	- 입지선정 및 상권조사 - 점포계약	10일	IV. 가맹점사업자의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3일	부담 참조
	- 인테리어 공사		
	- 간판제작		
실내외 공사착수 및 각종설비 설치	- 의탁자	15일	
	- POS설치		
	- 주방기기/기물 등 설치		
교육 실시	- 개점 전 점포운영교육 및 위생교육 ※ 실내외 공사 기간에 동시 진행	15일	
초도물품 입고	-초도상품(각종 식자재 등)	001	
기타 개점비용	-소모품 등	2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 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사는 가맹계약 당사자와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 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에 불구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 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 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O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개선사유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
개선자규	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O 간판교체 비용
가맹본부	O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
부담비용 항목	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O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비용비율	O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O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
	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
	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
	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지급절차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O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
	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비용부담	
제외사유	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

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되
가맹본 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 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 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 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 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 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세(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채다올김밥]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주선하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해당	사항 없음			

Ⅷ.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채다올김밥]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메뉴 조리 실습 POS 사용, 입금 방법 등	실습교육 일대일교육	가맹점 개점 7일 전까지 이수	필수 교육
수시 교육	신메뉴 가공, 조리교육 및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집단강의	교육실시 전	필요시
특별 교육	가맹점사업자의 요청 내용	실습교육	교육실시 전	필요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채다올김밥]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끼의 행복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14일	3,300	최초 계약시 필수적으로 이수
수시 교육	1일 이상	자기부담비용 없음	필요시 이수
특별 교육	교육내용에 따라 다름	가맹점사업자 100% 부담	요청시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 개점 3일 전까지 개점 전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서 제11조에 따라 개점이 불 가합니다.
- ※ 당사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가맹점의 관리자로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 목록 및 주소

연번	지역	직영점명	주소
_	_	_	-

2.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_	_

3.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_	_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053-756-4448)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및 또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재무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 3]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 4] 주요 품목 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 5] 메뉴

-1 HL		분 식	
김 밥	271124		4.5
소불고기쌈김밥	4.0	우동 튀김우동	5.0
▶ 매운제육쌈김밥	4.0	위점구등 얼큰김치우동	5.0
진미김밥	4.0	살떡볶이(att.우동.변두시즈 추가시각 1.	
기 매운멸추김밥	4.0	→ 모듬튀김떡볶이	7.5
생와사비참치김밥	3.8	라면(대지, 백원두, 시즌 추가시 각 0.5)	4.0
스팸샐러드김밥	3.8	기기 매운라면	4.5
새우샐러드김밥	3.8	비빔만두	6.0
게살샐러드김밥	3.8	9 a c −	5.5
남도떡갈비김밥	3.5	잔치국수	5.5
돈가스김밥	3.5	연시 <u>국</u> 포	6.5
치즈김밥	3.5	갈비만두(찐만두)	4.5
참치김밥	3.5		4.5
치킨마요김밥	3.3	다올튀김만두	
JJ 매운치킨김밥	3.3		
다올김밥	2.8		
계 절 메 뉴		식 사	
하절기		수제돈가스	7.0
냉면	7.0	치즈돈가스	8.0
비빔냉면	7.0	카레돈가스	8.0
-1005	Abstract	카레라이스	7.0
동절기		오므라이스	7.0
어묵탕	7.0	♪ 순두부찌개	7.0
丿해물짬뽕라면	5.5	참치김치찌개	7.0
The same of the sa	-	비빔밥	7.0
겨울한정메뉴		돌솥비빔밥	7.0
	0.000	불고기덮밥	7.0
중화짬뽕	7.0	제육덮밥	7.0
나가사끼 짬뽕	7.0	나지덮밥	7.0
		스팸/참치 김치볶음밥	7.0
신 메 뉴		육개장	7.0
		갈비탕	7.0
다올함박스테이크	8.0	황태해장국	7.0

[별첨 6]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